

#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의안 번호	3015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17.08. .

제 출 자 : 안 산 시 장

## □ 제안이유

- 『습지보전법』 제8조에 따라 대부도(상동·고랫부리 일원) 갯벌이 국가 연안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 고시됨에 따라
- 대부도(상동·고랫부리 갯벌) 연안습지보호지역을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효율적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임

## □ 주요내용

- 가. 안산시 연안습지보호 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안 제2조 및 안 제3조)
- 나. 위원회는 효율적 습지관리를 위하여 전문학식이 있는 외부 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(안 제9조)
- 다.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등을 시민에게 공개(안 제11조)

## □ 제정조례안: 불임 1

## □ 관계법령발췌서 : 불임 2

- 「습지보전법」 제8조(습지지역의 지정 등)

## □ 관련사업계획서 : 해당없음

## □ 예산수반사항 : 해당없음

## □ 사전예고 결과 : 불임 3

- 입법예고 : 2017. 5. 10. ~ 5. 30.[20일간]
- 예고결과 : 8건(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평가) 모두 반영

## □ 기타 참고사항 : 불임

- 방침결정문: 불임 4

##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안산시 대부도 갯벌의 체계적 보전과 습지보호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구성) ①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상 1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산시의회, 안산시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지역주민 2인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. 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

1. 안산시의회 의원 및 해양수산·환경분야 6급이상 관계공무원
2.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어촌계장 및 주민대표
3. 해양생태계분야 3년 이상 활동한 NGO 등 지역활동가, 대학(조교수급 이상) 또는 해양·환경분야 연구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
4. 그 밖에 제3항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자와 동등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다고 안산시장이 인정하는 사람

제3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
1. 연안습지 관리사업 계획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
2. 연안습지 보호 및 관리 등 사업선정, 시설·운영 등 자문
3. 연안습지보호지역과 관련된 분쟁 및 갈등 조정
4. 연안습지지역과 관련한 외부 기관과의 연계지원
5. 지역 주민의 이해와 협력 유도

제4조(존속기한) 위원회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로 한다.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,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  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사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,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위원의 임기)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.  
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하고, 공무원은 그 직위의

재임기간으로 한다.

제7조(위원의 위촉 해제 및 제척 등) ①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에 따른다.

② 위원은 위원회 활동의 투명성 확보를 기하기 위해 위원 제척 등에 관한 사항은 「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」 제6조의2에 따른다.

제8조(회의) ① 위원회는 연간 2회 이상 개최하고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일시, 장소 및 부의사항을 정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. 다만, 긴급을 요구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제9조(관계기관 등의 협조요청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 있는 관련 전문가 및 공무원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·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협조 요청 할 수 있다.

제10조(간사·서기) ① 위원회는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소관부서 업무 담당과장이 되고 회의에서 발언할 수 있다.

③ 서기는 업무 담당계장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.

제11조(위원회 활동내용 등 공개) 위원회 현황 및 회의결과 요약 등을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시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다만,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제12조(수당과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『안산시 소속위원회 설치 및 운영 관한 조례』 제15조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규정)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		해양수산과
입 안 자	실·과장 직위·성명	해양수산과장 김기서
	담당·팀장 직위·성명	해양개발계장 황선태
	담당자 성명·전화	이지선 (행정 2337)

# 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3015
----------	------

제안년월일 : 2017. 9. 7.  
제 안 자 : 문화복지위원장

## ■ 수정이유

- 안산시 소속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8조제2항  
에 규정되어 있어
- “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 
아니하도록 한다”의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.

## ■ 주요골자

- “다만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 
아니하도록 한다”의 내용을 삭제함. (안 제2조).

# **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**

**안산시 갯벌습지보호지역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 
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**

**안 제2조제3항 단서를 삭제한다.**

## 수정안 조문대비표

제정안	수정안
제2조(구성) ①·② (생략) 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안산시의회, 안산시 관내 시민단체 및 지역주민단체 등 관련 기관 대표자의 추천을 받아 안산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, 지역주민 2인이 이상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한다. <u>다만</u> ,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.	제2조(구성) ①·② (현행과 같음)  ③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<u>〈단서 삭제〉</u>